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022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배민지전임 mjbae@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I. 법령 개정사항

###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픽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픽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상향 조정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 규정 (제20조의2 신설)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한 우회덤핑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덤픽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의 차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생산설비 차이와 덤픽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구분	내용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 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허용 특례 신설 (제73조의3 신설)	1)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환적컨테이너를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2) 「해운법」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24.03.22.

**I. 법령 개정사항****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 이자 면제 근거 마련 (제35조의2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함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행일**

'24.03.01.

## I. 법령 개정사항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제10조)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연결원산지증명 발급 절차 규정 (제10조의2 신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 규정

#### (3) 시행일

‘24.03.22

## I. 법령 개정사항

## 4.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및 국내 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 증가(질의, 민원 등)

- 현행 규정의 표시 방식 및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대상범위 및 기준 적용과 관련한 개선요구(관세청, 상공회의소 등)사항을 반영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상거래 관행 관련 물품 예시 수정 (제75조제2항제5호)	상거래 관행 상, 포장·용기에 봉인되거나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물품의 예시에, 민원문의가 많은 물품*을 반영하여 예시를 변경 * 비디오테이프(거래단종) ⇒ 의료용품 등 위생의료 상 목적으로 봉인되는 물품
규제완화 건의사항 수용 (제76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2.10.31)을 수용하여 표시방식* 추가 * ○○ 제(일본제)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 (제76조제6항 본문 및 제5호)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의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키로 함 * made in california, made in virginia 등
타 법령의 표시사항 관련 예시 법령 변경 (제76조제7항)	식품위생법 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시 법령의 단순 변경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확대 (제77조제1항)	법령 해석 상,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수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 (77조제4항)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제조국(원) 등을 표시도록 하여, 우리나라를 제조국(원)으로 표시하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경우에,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국과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병기도록 함 * 최종 제조국 : 한국, 소재(원료) 원산지 : 중국

구분	내용
원산지 표시 검사를 조 사로 변경 (제83조 제목 및 제4 항, 별표11)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변경 * 원산지 표시 검사 ⇒ 원산지 표시 조사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 확대 (제86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에 따라 판정 기준적용대상을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함
제조원가 개념의 보완 (제86조제2항 본문)	일반적인 제조원가계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 원가계산방식을 보완 * 자체 원가계산능력이 없거나, 원가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실제 판매하는 경우 등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기 준 보완 (제86조제2항제1호)	현행 규정 상으로는, 수입가격을 관세부과를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가격(CIF기준)만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출 · 입자 간에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도 수입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 (제86조제6항)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원재료의 경우, 유통경로 상의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없어, 한국산 또는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미상재료는 수입산으로 분류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추가 (제87조제4항)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던 점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신설 * 영화필름 사례 및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를 감안,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함

## (3) 시행일

`24.03.08.

## I. 법령 개정사항

###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해외에서 투자·건설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등의 물품이 관세 등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관세 등의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6억원 이하'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하며, 해당 환급실적의 범위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 환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의 확인자 추가 (제2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 추가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적용 요건 완화 (제12조)	1)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6억원 이하'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 2) 환급실적의 범위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 환급실적은 제외

#### (3) 시행일

‘24.03.22.

## I. 법령 개정사항

## 6. 「일본 ·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일본 ·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4호, 2018. 7. 20. 공포, 7. 22. 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2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일본 ·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3. 그 밖의 공급자	16.23
중국	4. 천명(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5.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6. 골드리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7. 그 밖의 공급자	16.23
핀란드	8. 유피엠(UPM Communication Paper O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22
	9.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94
	10. 그 밖의 공급자	12.94

비고: 제10호의 공급자가 제8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 관계가 있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3) 시행일

2024.03.18.

**I. 법령 개정사항****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일제 정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 정비	<p>1)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p> <p>2)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자율 평가 등)</p> <p>3)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통일(통관적법성 검증→통관적법성 심사)</p>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p>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p> <p>*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p>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	<p>1) 공인 취소사유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p> <p>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p> <p>3) 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p>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구분	내용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p>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p> <p>*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p> <p>**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p>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p>1)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 검사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 수입 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p> <p>2)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p> <p>*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수출) 환특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 증빙) 자동 발급</p> <p>**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시 서류 제출 및 검사 제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 → 62조) 등</p>

## (3) 시행일

'24.03.14.

## I. 법령 개정사항

###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혼입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수출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등급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조신고 대상으로, 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조인증 대상으로 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2등급 수출용의료기 기 허가절차 개선 (제4조제2항제1호)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 허가 시 기술문서심사가 불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대상 1·2등급 수출용의료기기를 인증·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려고 함 *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세부 근거 마련 (제54조의4)	의료기기에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발견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장의 이를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고 함

#### (3) 시행일

‘24.03.08.

---

## I. 법령 개정사항

###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어 특허목록의 등재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65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련 서식 내 세부 제형을 표시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허목록에 등재사항 관련 절차 개선 (제62조의4, 제62조의11 개정, 별지 제59호의8 서식 신설)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의 변경 시 이해관계인 등 의견 청취 절차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소멸 사유 발생 사실 보고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마련함

#### (3) 시행일

‘24.03.11.

---

## I. 법령 개정사항

###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인상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

#### (3) 시행일

‘24.03.22.

## II. 입안예고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예고

#### (1) 입안 이유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편,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신설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당이익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제13조, 별표4)	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2배로 하고, 산정 금액에서 위법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 가능
마약 등 용어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위임 (제15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 영업자에게 마약 등 용어 변경 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위임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세분화 및 상향 신설 (별표3)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하여 위반 수준이 높은 경우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강화

#### (3) 의견수렴기간

2024.04.30.

---

## II. 입안예고

###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예고

#### (1) 입안 이유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제8조의3, 제8조의4, 별지 5호 서식)	(금지용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마약류의 상품명, 그 밖에 마약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은어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 - (지원 대상)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 중 간판, 메뉴판, 포장재에 표시·광고된 마약류 등의 용어를 변경한 자 - (지원 절차) ① 해당 업소 소재지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3) 의견수렴기간

2024.04.30.

## II. 입안예고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안 예고

## (1) 입안 이유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정비 (제12조, 별표1의2)	1)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정비 * (현행) 과징금 = 판매량 × 판매가격 → (개선) 과징금 = 2 × 판매량 × 판매가격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마련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 (제14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 (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

## (3) 의견수렴기간

2024.05.07.

---

## II. 입안예고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 예고

#### (1) 입안 이유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 등 마련 (제28조)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용도변경 승인 신청 가능토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까지 추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 마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별표 8, 별표 13)	통관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명확화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3) 의견수렴기간

2024.05.07.

### III. 조세심판사례

####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8.1.31.부터 2022.6.7.까지 독일 소재 A(이하 "A"이라 한다) 등 23개 수출자(이하 "쟁점수출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252건으로 자동차 252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송품장(Invoice)(이하 "원본송품장"이라 한다)에는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본송품장에 허위로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삽입하여 원산지신고서인 것처럼 위·변조(이하 위·변조된 송품장을 "쟁점송품장"이라 한다)한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관세법」 제270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44조 위반으로 고발·송치한 후, 2023.5.2.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개별소비세 000원, 교육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결정요지 : 재조사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3) 결정일

2024.03.08. (조심 2023 관 0093)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 해소
- 시정명령 시 의견제출기간 연장 등 충분한 의견진술기회 보장
- 원산지표시 관련 각종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하나의 「고시」로 통합

앞으로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3월 21일(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준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 허용)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여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다.

\* ① 50cm<sup>2</sup> 미만: 8포인트 이상, ② 50cm<sup>2</sup> ~ 3,000cm<sup>2</sup>: 12포인트 이상, ③ 3,000cm<sup>2</sup> 이상: 20포인트 이상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아울러, '22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 국내생산물품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정(최대 4 개월 단축)
- 특별한 상황에서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무역위원회는 3.6.(수) 10:30, 무역협회(51 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23.12.31. 공포)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 개월을 단축하였고, 덤플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25.1.1 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 덤플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2022 개정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관세(Customs)·소비세(Excise) 등 전체 국세의 약 15%를 징수하는 세입 징수기관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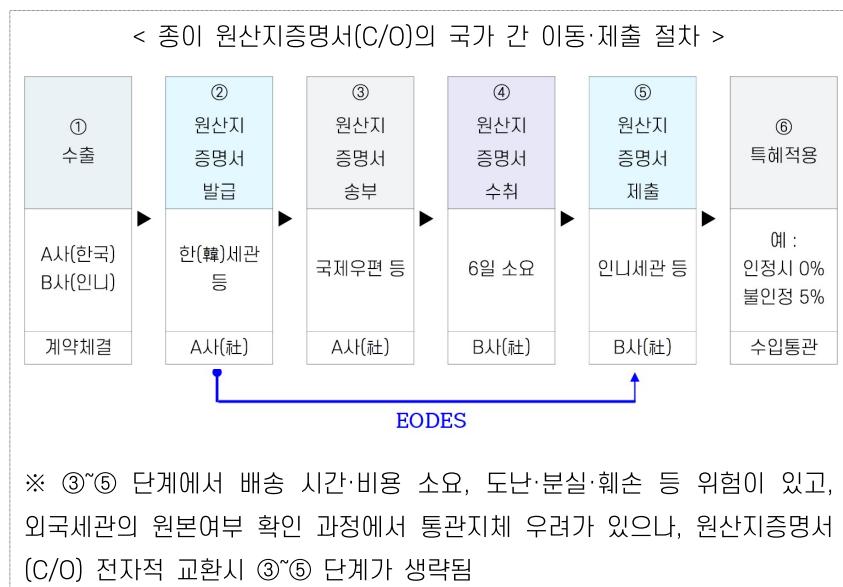
▪ [개요]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한-인니 양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유사한 성격.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23.1월 발효

▪ [추진경과] 한국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전자교환시스템(EODES) 도입 제안('21.6) → 전자교환시스템(EODES) 기술 실무그룹 신설('23.5) → 정식 운영 일정 합의('23.11) → 시범 운영('24.1)

※ [전자교환시스템(EODES) 운영국가(개통시기)] 중국('16.7), 인도네시아(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20.3), 베트남('23.7), 인도('23.12), 인도네시아(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24.2.29 정식 운영 시작)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 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 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한-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 시행('16.7)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년) 80건 → ('18년) 30건 → ('20년) 13건 → ('22년) 5건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 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 1 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

##### - 모델 구분 단순화,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여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하였다.

\* 기존 10 개 세부분류를 6 개로 통합(신발류, 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우모(조류의 털)'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재사용 우모 :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조류의 털)

김상모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